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화성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5.04.04(금)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직전 3년(2022년~2024년)내에 화성시 경영환경개선사업, 2022년 ~2025년 경기도와 시·군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5.03.31(월)	'25.04.18.(금)예정	선정 통보 후	공사완료부터	
~ '25.04.04(금)	(개별 문자통지)	~ '25.11.29(금)	~'25.12.06(금)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0. 04까지 신청가능 (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4월 4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월 4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5년 4월 18일(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100%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 2024년도 동일사업 지원내용과 상이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고
점포 환경개선	 간판 (불법간판 제외) 인테리어 (도배, 도색, 바닥 진열대, 전기조명공사 등) 소화·방범 설비 소독·살균기 설비 생장고, 에어컨, 집기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최대	지원부문 간
시스템 개선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2025.1.28.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POS 기기, 프로그램 구매 스마트 오더 CCTV 기기, 프로그램 구매 * 기기 구매 없이 프로그램만 별도 구매 불가 	300만원 이내	중복가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키오스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50㎡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됨.
- 다만, 50㎡미만인 사업장에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시 예외. (건축물대장을 통해 바닥면적이 50㎡ 미만임이 확인될 경우, 배리어프리 기능이 없는 일반 키오스크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약 95개소 내외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후 지원 예정

•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중복 신청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지원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함.(공급가액 기준)
 -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10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 예) 인테리어 비용이 30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100%(300만원) 이내

• 지워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imes 지원신청 o 평가 및 선정 o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불법성 간판,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화성시 관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화성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점포환경개선에 한해 시공업체당 사업 신청 소상공인 최대 5개사로 제한.
- 상대적으로 시공업체가 수가 적은 시스템개선의 경우 적용 예외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반화 불가)

항목	구 분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작성서류	2. 추진계획서 1부 (제2호서식)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필수 제출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소상공인 발급서류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필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항목	구 분	제출서류
m A	제작(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7.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필수 제출		8.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화성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해당시 제출	제작(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10.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CCTV 시공 시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① CCTV 시공 개수와 상관없이,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6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는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제출 불필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참고 요망)
	소상공인 발급서류	11. 건축물 대장 1부 (발급차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장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사업장에서 베리어프리 기능 미탑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제출 필수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발급 필수)
		12. 우대조건 확인서류

• 우대사항(가점부여)

-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자(2점, 주민등록초본 기준)
- 임차사업장(2점, **임대차계약서 기준**)
- 행복화성 지역화폐 가맹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지역화폐, 배달특급, 착한가격업소) 화성시 자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타(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 (1.5점, 중복 불인정)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분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정량평가	40점	■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현황(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정성평가	50점	■ 사업 연관성(사업장 소개,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 사업 효과성(기대효과) ■ 사업 타당성(견적비용의 적정성)
가산점수	10점	■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자(2점, 주민등록초본 기준) ■ 임차사업장(2점, 임대차계약서 기준) ■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타(기초수급자, 북한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1.5점, 중복 불인정)

○ 지원절차

신청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및	-	
평가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카드 인정 불가)
	-	
지원금 지급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KPC)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지원금 지급 (KPC→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2호, 포기서식 제13호)
-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22~24년)내 화성시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2022~2025년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시공업체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2호 서식】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100%로 변경)
- 선정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의 경우【제13호 서식】제출하여야 하고, 차 순위 예비 순번 자에게 지원 기회 제공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화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화성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
-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서명과, 책임대표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 지원금 수령 등 진행
- 기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기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외주업체 선정 시 화성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 (디지털 지원의 경우 예외)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제출서류: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 기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 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다 다 기 여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담 당 지 역	한국자	
-	화성시 기안남로 62 기배동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화성 (현장 접수처)	02-3702-0775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서울 (우편 접수처)	02-3702-0776 02-3702-0777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 http://www.kpc.or.kr/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지원사업/이벤트' 클릭
 - →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바로가기 클릭
- ☞ http://www.hscity.go.kr/ 화성시청 홈페이지 상단 중앙 검색창에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검색
 - → 검색결과 내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공고 클릭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별표1]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갑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표준산업분류	업 종
	в о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 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العالم الماما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 0.41.611.=1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 _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